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62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정점식 · 김태호 · 박충권
고동진 · 서천호 · 성일종
김정재 · 이현승 · 유상범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철도종사자의 직종이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등과 달리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운영자의 음주 등 적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별 음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며,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가중 처벌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을 합리화·체계화하여 철도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상 사용금지 약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 나. 호흡측정, 타액 간이시약검사, 혈액·소변·모발 채취 등 음주 및 약물 사용 여부의 확인·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 다. 음주 여부의 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및 제79조의2제1항제2호 신설).
-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 마. 음주에 대한 처벌을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각각 그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수준을 상향함(안 제72조의2 신설).
-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하여 가중 처벌 근거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82조의제1항 및 제2항 신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로, “같다”를 ““약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대하여 술을”을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등으로 술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술: 호흡측정, 혈액 채취(철도종사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로서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약물: 타액 간이시약검사, 혈액·소변·모발 채취(철도종사자가 타액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로서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술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약물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2조제2항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가중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9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 (생략)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5. (생략) ② · ③ (생략)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u>말하며,-----“약물”이라 한다</u> <u>다</u> ----- ----- 4.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등으로 술을

1. 술: 호흡측정, 혈액 채취(철도종사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로서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약물: 타액 간이시약검사, 혈액 · 소변 · 모발 채취(철도종사자가 타액 간이시약검사 결과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생 략)

<신 설>

<신 설>

과에 불복하는 경우로서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

-----.

1. -----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2. (현행과 같음)

④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

④ (생 략) 제79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6. ~ 8.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 략)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16. ~ 19. (생 략) ④ · ⑤ (생 략) <신 설>	<u>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③ ----- ----- ----- -----. 1.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16. ~ 19.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	---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

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

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

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

여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

제80조(형의 가중) <신 설>

니하는 사람

제80조(형의 가중) ① 술과 관련 하여 제41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 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4 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 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 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 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 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신 설>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4
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
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
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
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약물과 관련하여 제41조제1
항 및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
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① ~ ③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u><신설></u> 7의2. ~ 7의4. (생략) 8. ~ 12. (생략) ③ ~ ⑥ (생략)	<u>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 <u>1.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u>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③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u> <u>7의3. ~ 7의5. (현행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와 같음)</u> 8. ~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